

강릉원주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규칙 제 715호, 제정 2004. 2.18.
규칙 제 799호, 개정 2005.12.29.
규칙 제1086호, 개정 2009. 3.18.
규칙 제1557호, 개정 2016. 1.15.
규칙 제1910호, 개정 2020. 2.25.
규칙 제2031호, 개정 2021. 8.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에 근거하여 강릉원주대학교 교직원 등의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장려하고 사업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기술개발촉진 및 연구재원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 발명자와 학교의 권리보호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상의 발명 이외에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의 창작, 상표법상의 상표의 창안,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기술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5.>
2. “특허”라 함은 특허법상의 특허 이외에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상표법상의 상표,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5.>
3. “직무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발명을 말한다.
 - 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직원이 강릉원주대학교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함으로써 얻어진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 나. 강릉원주대학교 교직원 등이 외부의 자원(연구비 등)을 지원받아 창작하게 된 발명 <개정 2016.1.15.>
 - 다. 법률의 규정 및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강릉원주대학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
4.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상표법상의 상표,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은 각각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배치설계권”으로, “발명”은 각각 “고안”, “디자인”, “상표”,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로 그리고 “발명자”는 “고안자” 또는 “창작자”로 본다. <개정 2016.1.15.>

제2장 신고 및 출원 <개정 2016.1.15.>

- 제4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발명자의 직무발명은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이를 승계한다.
- ② 발명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용역계약서에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2021.8.17.>

제5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제2조제3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의하여 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 없이 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발명신고서에 각자의 지분(기여율)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② 발명자는 제1항의 발명신고 시 직무발명신고서와 함께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특허출원의 적격성 및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승계결정의 통지) ① 제6조에 의한 발명의 신고를 받은 협력단은 당해 발명에 대하여 그 적격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여 권리승계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이하 “권리승계의 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제1항의 신고에 대하여 발명자의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권리불승계의 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권리불승계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③ 협력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발명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명자는 제1항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권리승계합의서를 작성하여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제8조(특허출원 및 유지의 결정) ① 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발명자로부터 승계받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승계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특허출원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허출원비용의 일부를 발명자 또는 제3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출원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특허출원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에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발명자가 출원료 기타 제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승계받은 자유발명에 대하여는 그 승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부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위원회가 특허출원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력단은 특허출원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매년 특허권의 유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1.15.>

제3장 기술료의 분배

제9조(분배대상 및 비율) ① 협력단은 발명의 실시허락,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기술 이전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제외한 순 수입액을 발명자와 협력단에 분배하여야 하며 발명자 및 외부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기여율)에 따라 기술료를 분배한다. <개정 2016.1.15., 2021.8.17.>

② 제1항의 기술료의 분배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발명이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기술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 해당분을 제외하고 순수입액을 산정한다.

④ 정부지원 연구과제 또는 별도 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분배 지급기준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계약의 지급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6.1.15.>

제9조의2(보상금 지급) ① 발명자 등이 강릉원주대학교 임용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협

력단이 승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②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0조(자문료)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 규정에 따라 산업체 등에 기술개발지원 및 경영지원으로 발생한 자문료는 참여자에게 90%를, 협력단에 10%를 분배한다. <개정 2016.1.15.>

제11조(지급기간) ① 기술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하는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특허권설정등록, 특허권의 처분 또는 실시허락에 있어서 강릉원주대학교 및 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② 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강릉원주대학교 및 협력단에서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및 시행)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해석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등 지식재산권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15., 2020.2.25.>

제15조(강릉원주대학교 교직원 이외의 발명자) 강릉원주대학교 교직원 이외의 발명자(이하 “외부 발명자” 라 함)가 그 권리를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외부 발명자에 대한 제반 “권리와 의무” (발명의 신고, 기술료의 분배 등)는 본 지식재산권 규정에 의해 강릉원주대학교 교직원 발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2.25.>

부칙 <규칙 제7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발명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제2조 제3호의 발명자 등이 강릉원주대학교 임용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협력단이 승계 받는 경우에는 그 발명자 등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1.15.>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이 규정시행 전에 제 2조 제 3호의 발명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 시행 전에 발명자 등의 명의로 출원하여 출원 계속 중인 건에 대하여는 해당 건의 등록 후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799호, 2005.12.29.>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86호, 2009.3.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557호, 2016.1.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910호, 2020.2.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031호, 2021.8.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술료 분배비율(관련규정 제9조제2항) (단위: %) <개정 2016.1.15., 2020.2.25.>

분배항목	순수익액	발명자	협력단
- 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출원/등록/관리/유지 및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 기술노하우 이전		70	30
- 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발명자, 또는 사업단이 출원/등록/관리/유지 및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90	10

- ▶ <삭제>
- ▶ <삭제>
- ▶ <삭제>

[별표 2] 보상금 지급기준(관련규정 제9조의2 제2항) <개정 2016.1.15.>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조건
국내특허	500,000	1.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를 받은 경우나 기술평가 후 유지결정을 받은 것에 한함. 2. 지급금액은 단독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일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지급함. 3. <삭제>
국내실용신안	300,000	
국내디자인 또는 상표	200,000	
해외특허	2,000,000	
해외실용신안	1,000,000	
해외디자인 또는 상표	700,000	
특허협력조약(PCT) 및 마드리드의 정서에 의한 출원	1,000,000	

발명 (창작) 신고서							
발명(창작)의 명칭	국문 :	특허	실용 실안	디자인	상표	노하우	
	영문 :						
6T분류(택일)	<input type="checkbox"/> IT(정보) <input type="checkbox"/> BT(생명) <input type="checkbox"/> NI(나노) <input type="checkbox"/> ET(환경) <input type="checkbox"/> ST(우주항공) <input type="checkbox"/> CT(문화산업관광) <input type="checkbox"/> 기타()						
발명자 (창작자)	성명(영문필수)	지분(%)	소속	직위	전화번호(이메일)		
	한글 :				Mobile:		
	영문 :				Email:		
	한글 :				Mobile:		
	영문 :				Email:		
	한글 :				Mobile:		
	영문 :				Email:		
	한글 :				Mobile:		
영문 :				Email:			
관련 연구과제 (연구사업)	과제정보	<input type="checkbox"/> 국가연구개발과제 <input type="checkbox"/> 일반연구개발과제(민간, 지자체 등)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 없음					
	과제고유번호	연구사업명					
	과제 책임자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중앙부처	총 연구 기간				
		전담기관	해당연도연구기간				
	주관기관	해당연도연구비(현금)					
출원/등록 경비재원 (해당란 ○표 중복표시가능)	재원 구분	출원 단계	중간 단계	등록 단계	유지 단계		
	해당연구개발과제						
	공동출원인						
	발명자(개인)						
	산학협력단						
출원인 (해당란 표시)	<input type="checkbox"/> 산학협력단 단독출원 <input type="checkbox"/> 공동출원 (공동출원인명 : 000대학교산학협력단, (주)0000) - 주요 특약사항 여부 : 예) 특허비용 및 기술료 수익 배분 사항 등.						
발명의 공개여부 (해당란 표시)	<input type="checkbox"/> 공개 (공개방법: ①논문발표 ②학술지게재 ③연구보고서 ④기타()) - 공개일: 년 월 일 [첨부: 발표내용 사본 첨부] <input type="checkbox"/> 논문발표 및 학술지 게재 예정 <input type="checkbox"/> 공개하지 않음(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관계기관 또는 개인에게 내부 보고 포함)						
변리사 지정	<input type="checkbox"/> 산학협력단에 지정 위임 <input type="checkbox"/> 담당 변리사 직접 지정 (변리사지정신고서 제출)						
심사청구 여부	<input type="checkbox"/> 심사청구 <input type="checkbox"/> 심사미청구	발명 키워드					
사업화가능분야	예상 수요 기업						
상기의 발명(창작)을 「강릉원주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신고하며, 작성 정보를 특허법에 따른 특허청 행정절차(출원/등록 등) 진행을 위하여 관련 특허 사무소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첨부 : 발명 관련 설명 자료 사본 1부.							
				20 년 월 일			
				대표신고자(발명자)	(인/서명)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권리승계합의서							
발명(창작)의 명칭							
출원/등록번호							
양도인	1	성명		지분	%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본인은 하단의【양도인 동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	성명		지분	%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본인은 하단의【양도인 동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3	성명		지분	%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본인은 하단의【양도인 동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	성명		지분	%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본인은 하단의【양도인 동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5	성명		지분	%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본인은 하단의【양도인 동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양수인	성명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주소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기타사항							
<p>【양도인 동의사항】</p> <p>【발명의 권리승계】 상기 발명(창작)에 대한 권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노하우)를 「강릉원주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실시료지급에 동의합니다.</p> <p>【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수집】 상기 작성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의 각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하는 것이며, 이를 특허청 행정절차(출원/등록 등) 진행을 위해 관련 특허사무소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는것에 동의합니다.</p> <p>■ 관련 법령: 특허법시행령, 실용신안법시행령,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상표법시행령</p>							
20 년 월 일						(인/서명)	
권리승계 대표신고자							
<p>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p>							